「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근속지원금 지원 안내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된 자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기준일(2027년 4월 1일) ※ 해당 학교 [붙임1] 참고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에 취업하여 재직중인 자
 (취업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상 소재지가 도외인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장소가 도내로 명시된 경우 인정)
- 재직 상태가 확인된 자 중 2027년 2월 이내 근로를 시작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 최소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1순위) 2026학년도 산학공동교육 현장실습 이수자
- (2순위) 2026학년도 일반 현장실습 이수자

※ 제외대상

- **현장실습 조기 복교자 또는 연속 현장실습 참여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자**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기준일(2027년 4월 1일) 이전 퇴사한 자**
- **취업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상 소재지가 도외이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장소가 도내로 명시되지 않은 자**
-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3개월 미만 및 주 30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류 등 제출서류를 통해 재직 여부 및 근속기간 확인이 불가능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복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단기 계약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지속적 고용으로 보기 어려운 형태의 근로자**
- **기타 사유로 사업 참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금액

- (1순위) : 1인당 300만원
- (2순위) : 1순위 대상자 지원 후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완료 후 6개월 근속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 지원금은 월 50만원 기준으로 산정하며, 6개월 근속하여 총 300만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일시 지급
- 월 중 입사자의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1일당 16,000원 기준으로 일할 계산(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2 지원절차

❶ 취업 및 1차 서류 제출	❷ 명단 통보	❸ 지원금 신청	❹ 자격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취업자	도교육청	6개월 근속자	경제통상진흥원
· 취업 1개월 이내 근로계약서 및 근로확인서류 제출 ➜	· 지원 대상자 명단 통보 ➜	· 6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신청서 및 2차 서류 제출 ➜	·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취업 및 1차 서류 제출

○ 취업 후 1개월 이내 근로계약서 및 근로확인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 확인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소개 기업 취업 여부
 -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여부
 - 근로개시일이 2027년 2월 이내인지 여부
- 근로확인서류 확인사항
 - 근로계약서상 사업장명과 근로확인서류상 사업장명 일치 여부

명단 통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자 명단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통보

지원금 신청

○ 신청기한 : 6개월 근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

예시) 2026년 11월 23일 취업 → 2027년 5월 22일 6개월 근속 →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제출서류			수량	확인 내용
온라인 제출	2차	① 근속지원금 신청서		1부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2차	②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포함) 중 1개
	2차	③ 통장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2차	④ 급여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1부	• ㉠~㉡ 중 1개 제출 • 6개월 급여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 : 재직처에서 발급 • ㉠ : 기업명 및 근로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 ㉡ : 급여명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제출 가능 • ㉡ : 본인 계좌번호 및 급여 입금내역이 한 화면에서 확인되어야 함
			㉡ 급여 입금내역		
	1차 · 2차	⑤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장소, 근로개시일,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등 확인 • 회사 직인 및 본인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 전체 페이지 제출 필수 • 1차 제출 시 근로계약을 기간별로 나누어 체결한 경우, 2차 제출 시 6개월 근로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체 근로계약서 제출
	1차 · 2차	⑥ 근로확인서류 ※ [붙임2], [붙임3] 참고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 중 1개 제출 • 근로계약서상 사업장명과 일치 여부 확인 • 신청서 제출 월과 근로확인서류 발급 월이 동일하여야 함 • 서류를 통해 6개월 근속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2차	⑦ 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1부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2차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 1차 신청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https://www.1577-0365.or.kr) 접속 후 로그인



② 운영사업→구직자 지원사업→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근속지원금



③ 신청서 접수 클릭



④ (필수)이용약관 체크→기본정보 입력 올바른지 확인 후 학교 선택 및 파일 첨부 →신청하기 클릭

○ 2차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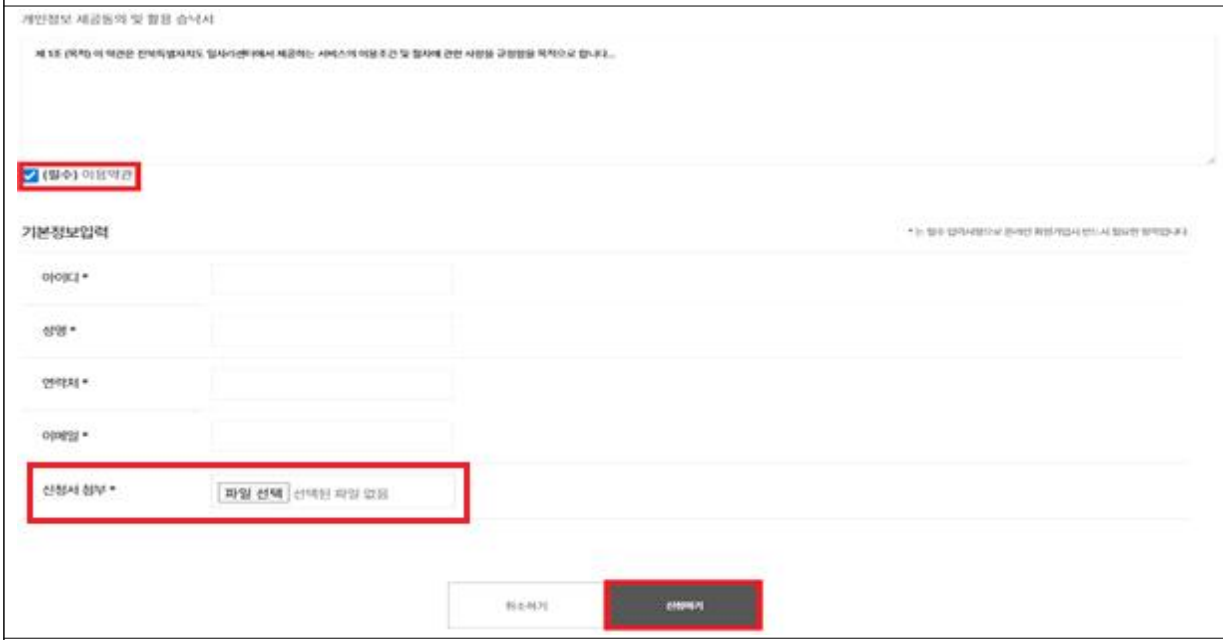
①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https://www.1577-0365.or.kr) 접속 후 로그인



② 운영사업→구직자 지원사업→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근속지원금



③ 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작성→신청서 접수 클릭



④ (필수)이용약관 체크→기본정보 입력 올바른지 확인 후 신청서 첨부→신청하기 클릭

○ 참고사항

- 스캔(PDF) : 스캐너 또는 스마트폰 앱 활용
- 사진(PNG, JPG 등) 촬영 시 유의사항
 - 서류에 그림자나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선명하게 촬영할 것
 - 문서가 비스듬히 찍히지 않도록 직각에서 촬영할 것
 - 서류가 잘리지 않도록 한 장에 담아 촬영할 것

자격요건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검토

- 제출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지원요건 충족 여부 판단
-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또는 보완 안내

○ 지원금 지급 : 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3 유의사항

○ 제출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4 문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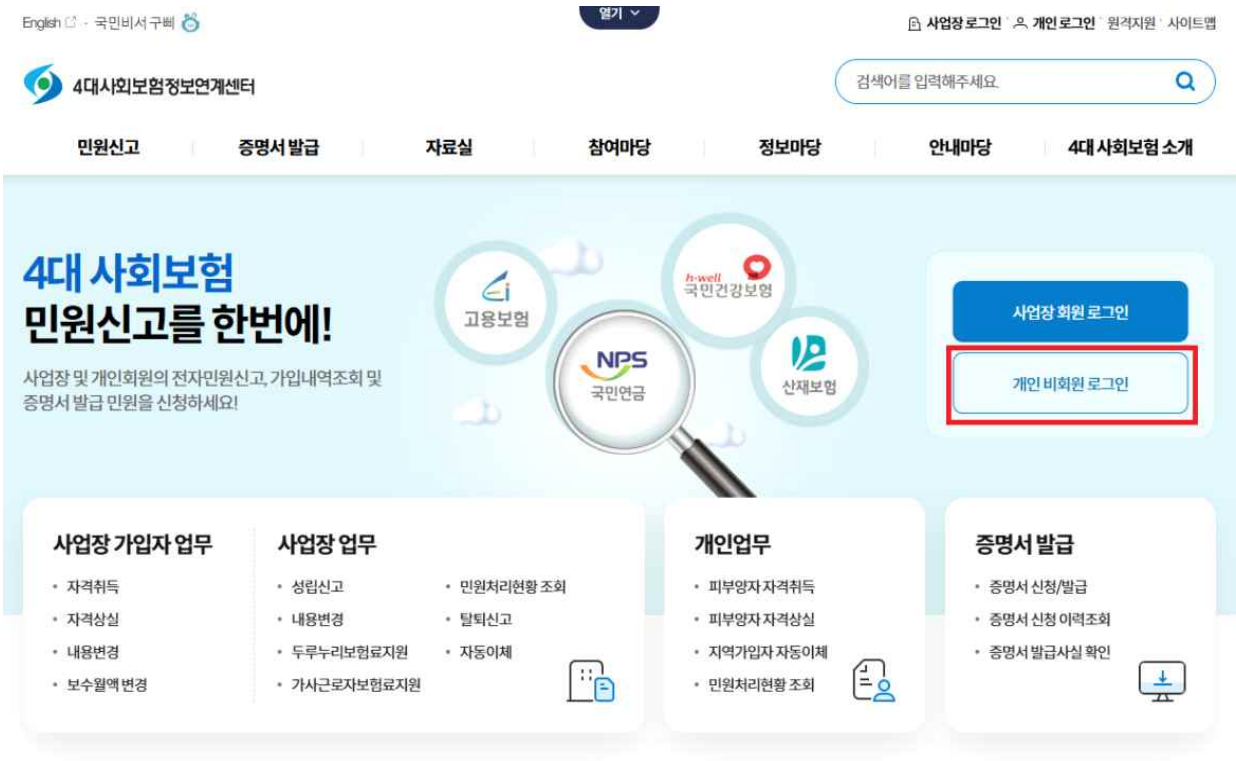
○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담당자(063-280-1006)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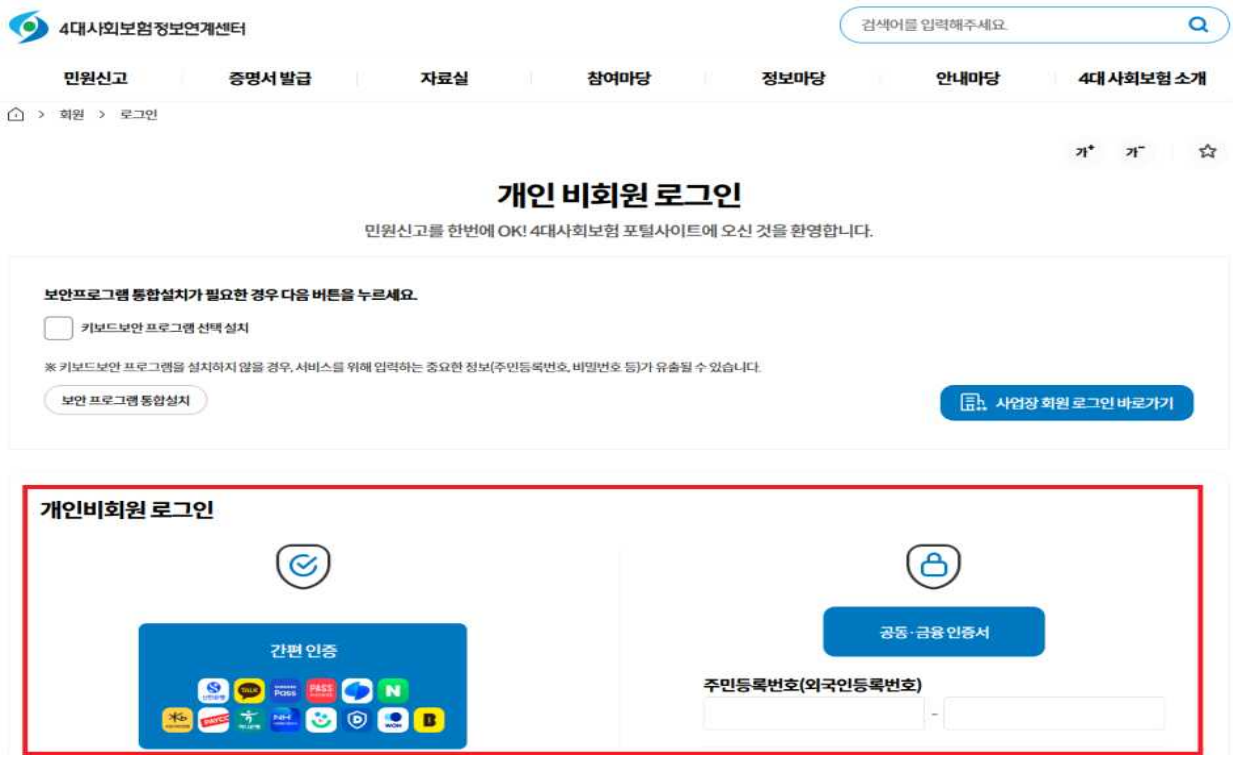
붙임1 도내 직업계고 31개교

구분	연번	학교명	비고
마이스터고	1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산학공동교육 미참여
	2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	
	3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4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특성화고	5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6	남원용성고등학교	
	7	수소에너지고등학교	
	8	이리공업고등학교	
	9	전북베이커리고등학교	
	10	전북유니텍고등학교	
	11	전북자동차고등학교	
	12	전북펫고등학교	
	13	전주공업고등학교	
	14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15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16	정읍제일고등학교	
	17	칠보고등학교	
	18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19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20	강호항공고등학교	
	21	글로벌학산고등학교	
	22	남원제일고등학교	
	23	덕암정보고등학교	
	24	완산여자고등학교	산학공동교육 미참여
	25	원광보건고등학교	
	26	전북인공지능고등학교	
	27	진경여자고등학교	
	28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산학공동교육 미참여
	29	한국한방고등학교	
일반고 (전문계열)	30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31	함열여자고등학교	

붙임2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❶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후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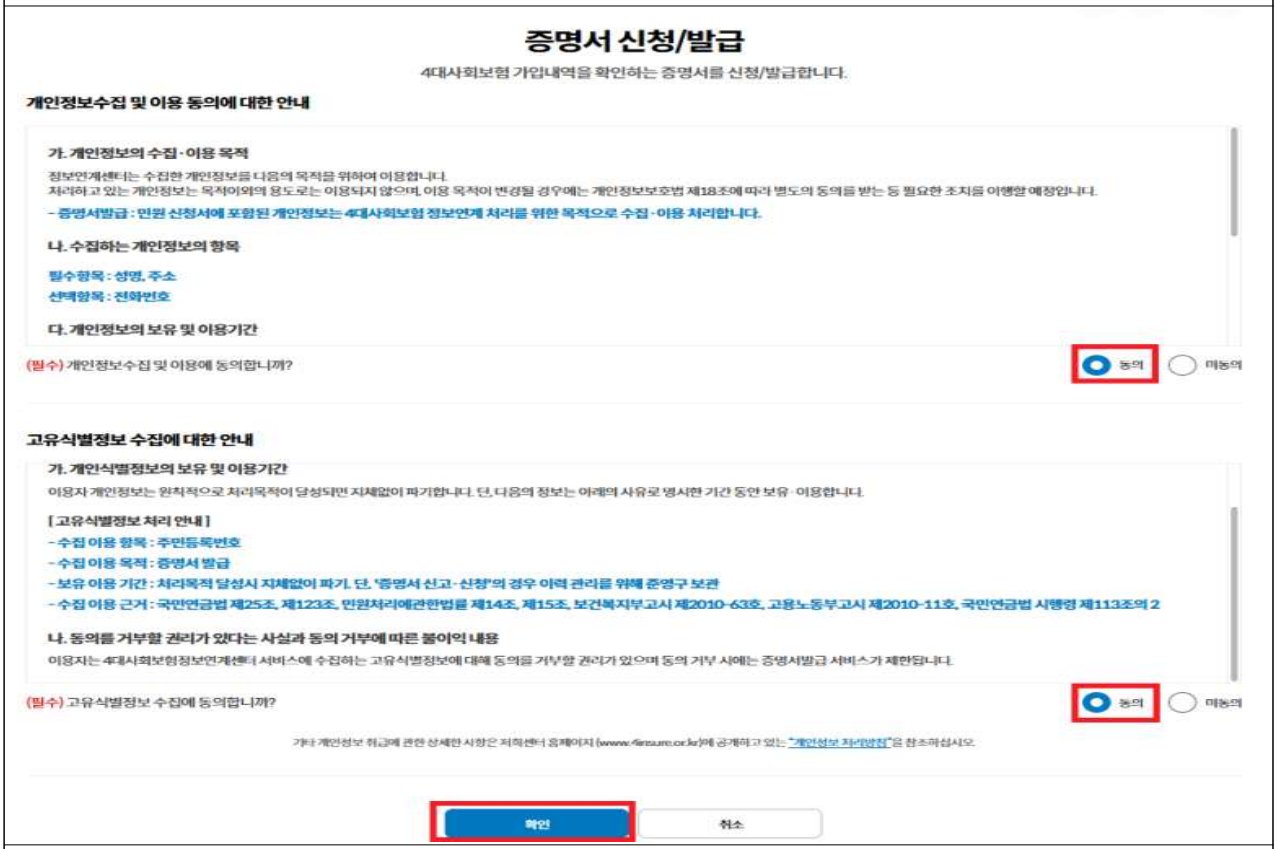
❷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❸ 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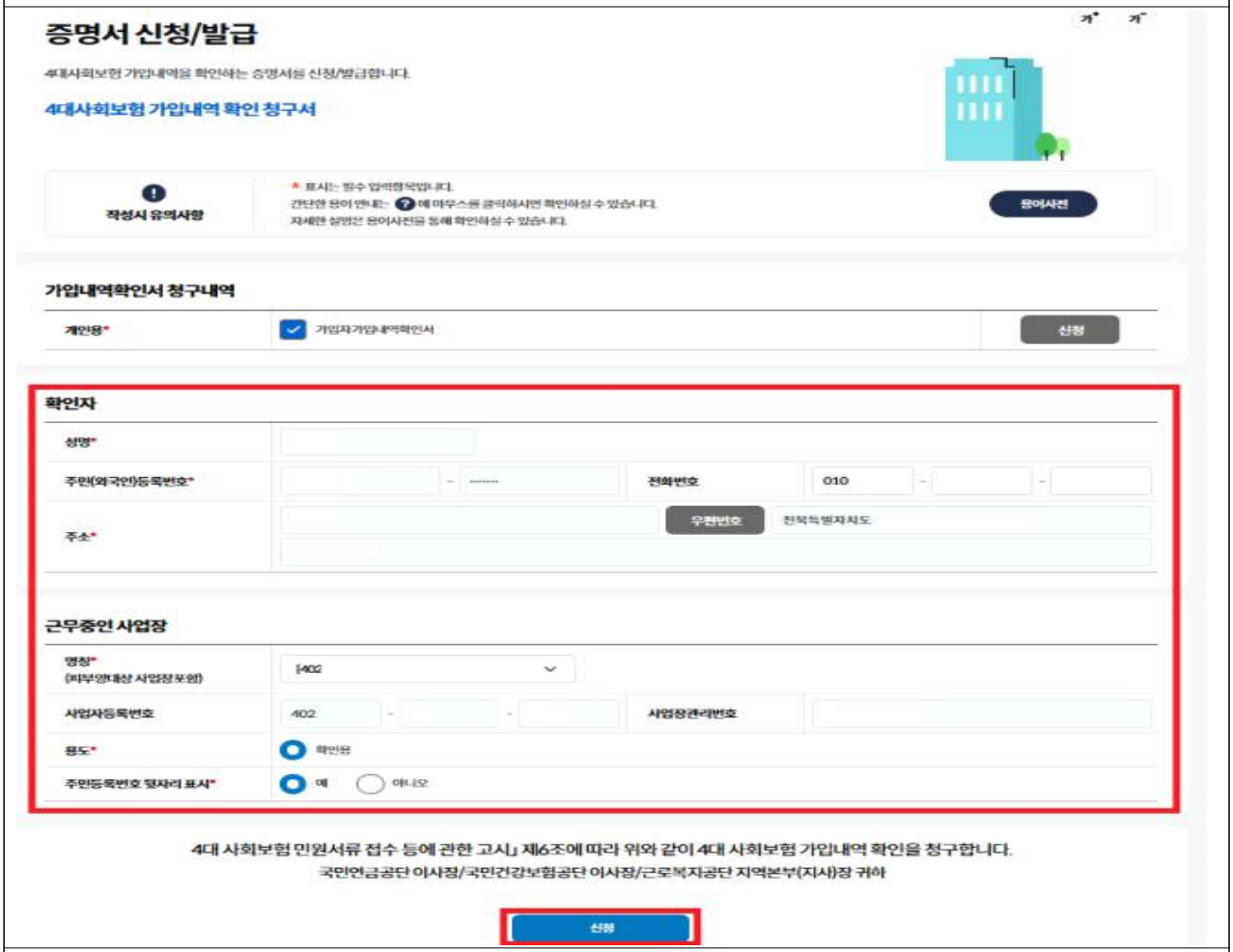
❹ 완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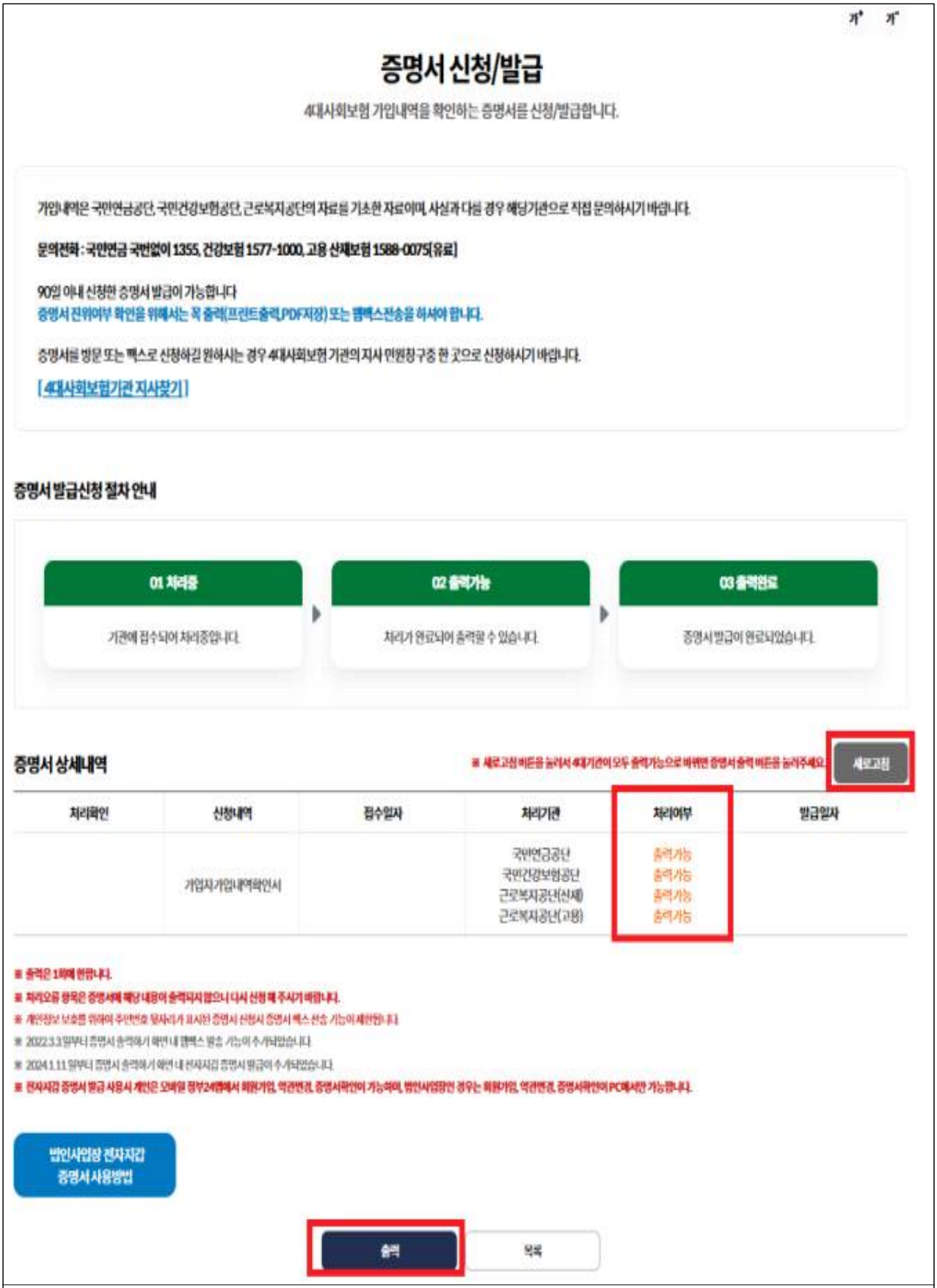
❺ 동의 및 확인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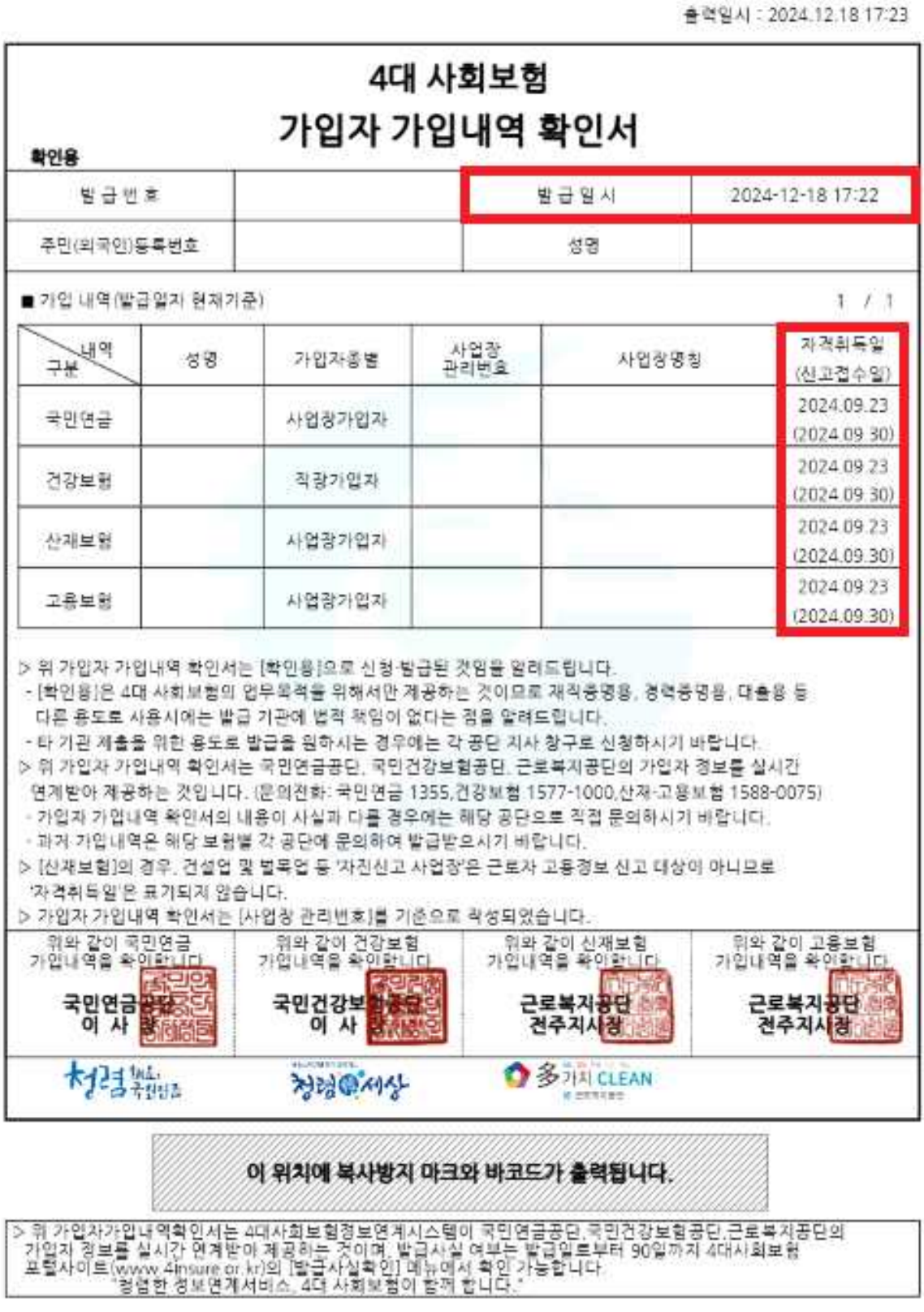
❻ 확인 클릭



❼ 확인자와 근무중인 사업장 항목이 올바른지 확인 후 신청 클릭



❽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 4대 기관이 모두 출력 가능한 상태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후 출력 클릭



출력일시 : 2024.12.18 17:2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확인용

발급번호		발급일시	2024-12-18 17:22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 가입 내역(발급일자 현재기준) 1 / 1

구분 \ 내역	성명	가입자종별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일 (신고접수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2024.09.23 (2024.09.3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024.09.23 (2024.09.30)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			2024.09.23 (2024.09.30)
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2024.09.23 (2024.09.30)

▷ 위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확인용]으로 신청·발급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확인용]은 4대 사회보험의 업무목적을 위해서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재직증명용, 경력증명용, 대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발급 기관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타 기관 제출을 위한 용도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각 공단 지사 창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문의전화: 국민연금 1355,건강보험 1577-1000,산재·고용보험 1588-0075)
-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공단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가입내역은 해당 보험별 각 공단에 문의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자격취득일'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 사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장

청렴 1st, 국민신뢰 | 청렴세상 | 多가치 CLEAN

이 위치에 복사방지 마크와 바코드가 출력됩니다.

▷ 위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이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연계받아 제공하는 것이며, 발급사실 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의 [발급사실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렴한 정보연계서비스, 4대 사회보험이 함께 합니다."

❾ 발급일시 및 자격취득일 확인

붙임3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



❶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 후 개인 클릭



❷ 일반근로자 체크 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동의 체크 ❹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❺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클릭



❻ 보험구분 : 고용, 조회구분 : 상용 선택 후 조회 클릭



❼ 근무중인 회사 선택 후 신청 클릭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 (근로자용/피보험자용)

발급번호	0000-	발급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 사업장	명 칭			
	소재지			

자격내역	자격 취득일	자격 상실일	비고
			근로자

※ 본 자료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 군· 구 및 읍· 면· 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국민소통- 민원/조회- 증명원 진위확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❽ 신청인, 대상 사업장, 자격내역, 발급날짜 확인